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혈액관리법」 개정('19.12.3.공포, '20.12.4.시행)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기준 마련

3. 주요내용

혈액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혈액원 및 혈액사용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·재고량·폐기량 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(안 별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2호 중 “법 제17조의2”를 “법 제17조의3”으로 하고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1호	150만원
나.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2호	150만원
다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3호	200만원
라.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4호	100만원
마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5호	150만원
바. 법 제13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	법 제23조제1항제6호	150만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, 성생활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1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	12. 법 제17조의3----- ----- --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	12. 법 제17조의3-----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2 - 2946